

## 6. 1993年度 國民住宅基金運用計劃(案)

資料提供：建設部

### 1. 議決主文

1993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(안)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1993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(안)을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자 동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1993년도 기금 총조달규모 : 5,214,814백만원
- 융자금회수 : 1,150,000백만원
  - 채권발행수입 : 1,665,371백만원
  - 청약저축수입 : 1,016,426백만원
  - 전년도이월금 : 300,000백만원
  - 기 타 : 1,083,017백만원
- 나. 1993년도 기금 총운용규모 : 5,214,814백만원
- 주택건설사업 : 2,659,263백만원
  - 대지조성사업등 기타사업 : 540,737백만원
  - 차입금상환 : 1,908,136백만원
  - 기금운영비 : 80,726백만원
  - 기 타 : 25,952백만원

#### 4. 1993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(안) : 별첨

#### 5. 참고사항

##### 가. 관계법령

-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

① 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.

③~④ 성략

#####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### 다. 합 의 :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와 협의완료

#### 1. 목표 및 기본방향

##### 가. 목 표

- 소형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
-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향상

##### 나. 기본방향

-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1·2종 국민주택채권,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기금채권등의 재원으로써 안정적으로 확보
- 공공주택 4만호, 근노자주택 10만호, 소형분양주택 10만호등 총 24만호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과 기타 대지조성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없이 지원

## 2. 1993년도 자금운용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92 계 획	'93 계 획	증 감
수          입	· 대출금 및 예치금이자수입	773,829	931,257	157,428
	· 복권판매수입	50,000	80,000	30,000
	· 용자금회수	623,327	1,150,000	526,673
	· 제 1 종국민주택채권	905,338	1,215,371	310,033
	· 제 2 종국민주택채권	400,000	300,000	△100,000
	· 국민주택기금채권	120,000	150,000	30,000
	· 청약저축수입	1,312,559	1,016,426	△296,133
	· 세계은행 제4차 차관수입	28,800	34,760	5,960
	· 전 년도 이월금	802,887	300,000	△502,887
	· 기타 예수금	36,000	37,000	1,000
합 계		5,052,740	5,214,814	162,074
지                      출	· 주택건설사업	2,131,081	2,659,263	528,182
	- 공공임대	24,000	30,000	6,000
	- 공공분양	112,000	98,000	△14,000
	- 사원임대	82,950	221,250	138,300
	- 근로복지	219,380	308,000	88,620
	- 장기임대	37,180	-	△37,180
	- 소형분양	379,613	718,250	338,637
	- 다세대	49,000	49,000	-
	- 다가구단독	44,800	44,800	-
	- 농촌주택	105,000	105,000	-
	- (이월사업)	1,077,158	1,084,963	7,805
	· 기타 사업	868,919	540,737	△328,182
	- 주거환경개선주택	12,600	14,400	1,800
	- 기숙사자금	6,000	-	△6,000
	- 주택전세	45,000	45,000	-
	- 대지조성자금	500,000	300,000	△200,000
	- 조립식주택설비	100,000	90,000	△110,000
	- (이월사업)	205,319	91,337	△113,982
	·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	11,897	13,452	1,555
	· 차입금상환	1,663,929	1,908,136	244,207
· 여유자금	300,000	12,500	△287,500	
· 기금운영비	76,914	80,726	3,812	
합 계		5,052,740	5,214,814	162,074

### 3. 추정대차대조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91말현재	'92말(추정)	'93말(추정)		
자 산	· 대출금	10,054,031	13,602,165	16,476,165		
	· 예치금	802,887	300,000	12,500		
	· 미수이자	97,498	97,495	117,500		
	합 계	10,954,416	13,999,660	16,606,165		
부 채 와 자 본	부 채	· 제1종채권	3,371,284	3,903,870	4,616,825	
		· 제2종채권	1,379,554	1,779,554	2,079,554	
		· 청약저축	2,631,629	3,036,890	3,096,528	
		· 예탁금	103,615	110,941	114,988	
		· 차관자금	159,101	172,501	181,661	
		· 기금채권	120,000	240,000	390,000	
		· 채권이자충당금	450,201	576,482	701,740	
		· 미지급이자등	327,912	409,485	498,428	
	자 본	채	· 관리자금	1,174,351	2,323,171	3,167,175
			소 계	9,717,647	12,552,894	14,846,899
자 본	자 본	· 재정출연	343,000	343,000	343,000	
		· 복권자금	233,300	283,300	363,300	
		· 이익잉여금	660,469	820,466	1,052,966	
	소 계	1,236,769	1,446,766	1,759,266		
	합 계	10,954,416	13,999,660	16,606,165		

### 4. 추정손익계산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91년 실적	'92년(추정)	'93년(추정)
수 익 부 문	· 영업수익	722,866	773,829	931,257
	- 대출금이자	653,264	702,141	911,757
	- 예치금이자	69,602	71,688	19,500
	· 영업외수익	7,355	-	-
	합 계	730,221	773,829	931,257
비 용 부 문	· 차입금이자	409,065	525,018	604,579
	· 기금관리경비등	75,431	88,811	94,178
	· 영업외비용등	12,726	-	-
	비 용 합 계	497,222	613,829	698,757
	당 기 순 이 익	232,999	160,000	232,500
	합 계	730,221	773,829	931,257

## 5. 용자기준

자금종류	호당용자한도액 (천원)	이율 년%	상환기간	비고
○ 공공임대주택 · 전용면적 40m <sup>2</sup> 이하	6,000	3.0	5년거치 20년상환	
○ 공공분양주택 · 전용면적 40m <sup>2</sup> 이하	14,000	6.0	5년거치 20년상환	
○ 사원임대주택 · 전용면적 50m <sup>2</sup> 이하 단,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60m <sup>2</sup> 이하	15,000	3.0	5년거치 20년상환	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시 잔여기간에 한하여 근로복지주택자금으로 전환
○ 근로복지주택 · 전용면적 50m <sup>2</sup> 이하 단,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60m <sup>2</sup> 이하	14,000	8.0	5년거치 20년상환	거치기간 종료후 분양주택자금 이율적용
○ 장기임대주택 · 전용면적 60m <sup>2</sup> 이하	12,000 (단, 전용면적 50m <sup>2</sup> 이하는 14,000천원)	3.0	10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	분양주택으로 전환시 거치기간종료·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타지원자금을 포함하여 한도액이내로 지원
○ 분양, 조합, 재개발주택 · 전용면적 60m <sup>2</sup> 이하	12,000 (단, 전용면적 50m <sup>2</sup> 이하는 14,000천원)	10.0	1년거치 19년상환	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타지원자금을 포함하여 한도액이내로 지원
○ 농촌주택	7,000	7.5	5년거치 15년상환	
○ 재해주택	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함	3.0	5년거치 15년상환	
○ 다세대주택 · 전용면적 60m <sup>2</sup> 이하	7,000	10.0	1년거치 19년상환	

자 금 종 류	호당용자한도액 (천원)	이율 년%	상 환 기 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가구단독주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면적 660m<sup>2</sup> 이하로서</li> <li>가구당 20m<sup>2</sup> 이상 60m<sup>2</sup>이하.</li> <li>단, 그중 1가구는 85m<sup>2</sup>까지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	56,000 (단, 가구당 7,000)	10.0	1년이내 정기상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훈주택</li> </ul>	분양주택과 동일	4.0	1년거치 19년상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태양열주택</li> </ul>	3,500+건축평수× 250	10.0	1년거치 19년상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거상환개선 주택자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단독주택은 85m<sup>2</sup>이하, 다세대,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·다가구기준에 따름</li> </ul> </li> </ul>	9,000천원 이내 (단, 타지원자금과의 합계액이 12,000천원 을 넘을 수 없음)	10.0	1년거치 19년상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숙사자금</li> </ul>	대학기숙사확충계획 (교육부) 및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의함	5.0	5년거치 5년상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전세자금</li> </ul>	3,000	5.0	2년이내 정기상환	용자대상자 선정기 준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지조성자금</li> </ul>	총소요자금범위내 에서 건설부장관이 별도로 정함	10.0	1년이내 정기상환	필요한 경우 건설부장 관은 용자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, 여유자금 범위내에서 추가로 용자 자되는 대지조성자금의 용자기간은 건설부장관 이 별도로 정함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립식주택 설비자금</li> </ul>	총소요자금범위내 에서 건설부장관이 별도로 정함.	12.0	2년거치 3년상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자재구입자금</li> </ul>	총소요자금범위내 에서 건설부장관이 별도로 정함	10.0	1년이내 정기상환	